

이천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

소관부서 : 도로관리과

제정 2025. 9. 29 조례 제2291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제설 관련 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설장비 지원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제설장비”란 제설작업을 위하여 이천시에서 구입한 차량 및 트랙터 부착형 장비 등을 말한다.

제3조(배정 및 보관)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설장비를 읍·면·동에 배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 및 보관할 수 있다.

제4조(관리) ① 제설장비의 총괄 관리·감독은 제설 업무 담당 부서장(이하 “총괄관리자”라 한다)이 하며, 읍·면·동별로 배정하여 보관하는 제설장비의 관리책임자는 읍·면·동장으로 할 수 있다.

② 관리책임자는 제설장비의 대여를 위한 반출·반입 시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③ 총괄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는 제설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·정비하고, 필요한 경우 부품 교체 및 수리를 실시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(운영 및 교육) ① 제설장비는 폭설 등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읍·면·동 관할 구역에 거주하면서 차량 또는 트랙터 등을 소유하거나 운행 가능한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설작업 전에 자원봉사자에게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6조(자원봉사자 관리) 제5조에 따른 제설작업 자원봉사자는 읍·면·동별로 선정 관리한다.

제7조(보험 가입) 시장은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제 및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8조(지원) 시장은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차량 및 트랙터의 유류비
2.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인 제설작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제9조(제설작업 외의 사용) 제설작업 외의 경우로서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작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설장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제설장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전에 구입·보관·관리하고 있는 제설장비는 이 조례에 따른 제설장비로 본다.

<별지 서식>

제 설 장 비 반 출 · 반 입 관 리 대 장

부서명 : OO읍·면·동

번호	장비명	반출일자	장비 사용자	연락처	반입일자	반입 확인자	장비 이상 유무	비고
1								
2								
3								
4								
5								
6								
7								
8								
9								
10								